



## 수도요금 및 수도세 조정

### 물 요금 및 요금 조정

2012년 2월 14일 오후 6시30분

Community Meeting Center  
11300 Stanford Avenue, Garden Grove

**William J. Dalton**  
Mayor

**Steven R. Jones**  
Mayor Pro Tem

**Bruce A. Broadwater**  
Council Member

**Dina Nguyen**  
Council Member

**Kris Beard**  
Council Member

가든 그로브 시의회에서는 물가인상이나, 시에서 다른 기관에 물값으로 지불하는 도매 요금의 인상 또는 인하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향후 시의 공공사업 수도 서비스국에 해당하는 수도 요금 및 요율에 대한 자동 조정을 승인하는 시조례 발의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Garden Grove Community Meeting Center, 11300 Stanford Avenue, Garden Grove에 위치한 시의회실에서 2012년 2월14일 오후6시30분에 공청회를 열 것임을 이에 공지합니다.

이러한 향후 조정은, 우리 시가 가주 공공보건부(Department of Public Health, DPH)나 미 연방 환경보호청에서 규정하는 서비스 의무규정 및 규제조항 등을 계속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시에서 수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시운영비의 향후 인상분이나, Metropolitan Water District (MET)나 Orange County Water District (OCWD)등 다른 기관에서 물을 입수하기 위해 시측 비용의 차후 인상분을 계속해서 감당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요금 조정안의 이유

2007년도에 시에서는 공사비, 원자재, 재료비, 연료 및 인건비 인상분을 메꾸기 위해 수도요율을 조정할 바 있습니다. 2007년도에 정해진 요율은, 10년의 기간동안 수도서비스국이 감당해야 하는 충분한 운영 자금, 자본적 지출로 보는 개량 및 부채 의무에 근거하여, 필요로 하는 충분한 액수의 추정치에 의해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2007년도의 요율 조정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이제는 완전히 시행되었습니다. 시에서 우리 커뮤니티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운영비가 계속 발생하겠지만, 이러한 지속적인 운영비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물가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시에서 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생하는 지속적인 운영비에 물가인상분을 반영하도록 수도 요율을 조정하는 것은, 시에서 수도재정플랜을 계속해서 완전히 실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입니다.

가든그로브에서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물의 대부분은 Orange County Water District (OCWD)에서 관리하는 지하수역에서 펌프로 끌어올린 물과, 지역 물 도매업자인 Municipal Water District of Orange County (MWDOC)를 통해 Metropolitan Water District of Southern California (MET)로부터 도매로 구입한 물의 혼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OCWD나 MET/MWDOC에 물값으로 지불해야 하는 요율에 대해 전혀 통제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에서도 MET/MWDOC나 OCWD에서 적용하는 요율인상분을 감당하기 위해 수도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시의 수도 시스템을 관

리하고 유지하는 비용이나 채권 대차비 상환, 그리고 주나 연방정부에서 적용하는 규정을 준수할 목적으로 지정해 놓은 자금을 MET/MWDOC 및 OCWD에서 적용하는 물값 인상분을 지불하는 데 대신 사용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위에 언급한 지출을 위한 자금을 만들어 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 조정이 발의된 수수료

미터 서비스로 제공되는 시의 수도 요금은 네가지의 요소로 나누어집니다: (1) 고객의 미터 크기에 기반한 최소 서비스 요금; (2) 고객의 미터 크기에 기반한 자본적 지출로 보는 개량 요금; (3) 고객이 쓰는 물의 양에 기반한 상품 배달료; 그리고 (4) 고객이 쓰는 물의 양에 기반한 상품 조정요금. 시의 수도 서비스에 대해 고객은 격월로(두달에 한번) 청구서를 받습니다. 물 서비스에 대해 고객에게 두달에 한 번 청구되는 총액은 각각의 네가지 수도세 구성요소를 합친 금액입니다. 아래 표는 각각의 수도세 구성요소에 대한 현재 금액을 보여줍니다.

미터 크기	(1) 최소 요금	(2) 자본적 지출로 보는 개량 복구 요금
5/8" & 3/4"	\$ 11.95	\$ 1.38
1"	\$ 31.87	\$ 1.94
1 1/2"	\$ 61.73	\$ 2.48
2"	\$ 93.58	\$ 4.00
3"	\$155.31	\$15.18
4"	\$215.04	\$19.32
6"	\$491.80	\$28.98
8"	\$768.58	\$40.02
10"	\$1,045.34	\$51.06

물 사용 단위 (1단위 = 100 제곱 피트)	(3) 사용된 물의 단위당 상품 배달료	(4) 사용된 물의 단위당 상품 조정요금
0-36	\$2.11	\$0.53
37-250	\$2.19	\$0.53
251-500	\$2.27	\$0.53
>500	\$2.35	\$0.53

시에서는 첫 세가지 수도세 구성요소(1. 미터에 기반한 최소 요금; 2. 자본적 지출로 보는 개량 요금; 및 3. 상품 배달료)에 실제 물가상승을 반영할 수 있도록 오(5)년간 매년 자동조정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의 발의안에 따르면, 이러한 수도세 구성요소들은, 2012년 7월 1일부터 2016년 7월 1일까지 매년 7월 1일에, 해당 년도의 3월1일 직전까지 일년(3월1일부터 2월28일)의 기간동안 Engineering News Record Construction Costs Index - 로스 앤젤레스 지역 ("ENR")을 근거로 나타난 공사비 인상분 백분율과 같은 백분율을 기반으로 하여, 물가인상폭을 반영하기 위해 시의회의 다른 조치 없이 최고 육(6)퍼센트까지 매년 조정될 것입니다. 육(6)퍼센트를 초과하는 모든 조정은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지난 오(5)년간, ENR에 따른 연간 평균 물가상승률은 이(2)에서 삼(3)퍼센트 사이였습니다.

다음 테이블은 오년간 해마다 물가인상률이 삼(3)퍼센트라고 가정했을 때, 일반적인 가정에 청구될 수도요금 구성요소 및 격월 총액에 대해 이루어질 조정분을 예를 들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표는 예시용일 뿐입니다. 실제 요금을 다룰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정고객에 적월로 청구되는 평균요금총액계산

	최소 요금*	+	자본적 지출로 보는 개량 복구료*	+	상품 배달료**	+	상품 조정 요금**	=	청구서 총액
현행 요금	\$11.95	+	\$1.38	+	\$63.30	+	\$15.90	=	<b>\$92.53</b>
첫해 조정분 (물가상승 3%로 추정)	\$12.31	+	\$1.42	+	\$65.20	+	\$15.90	=	<b>\$94.83</b>
5년 후 조정요금 (매년 물가상승 3%로 추정)	\$13.85	+	\$1.60	+	\$73.38	+	\$15.90	=	<b>\$104.73</b>

\*5/8" 또는 3/4" 미터 기준.

\*\*두달간 물 30유닛 (3,000 제곱피트) 소비에 기준.

일반적인 가정용 고객들은 보통 두달마다 4 HCF<sup>1</sup> (2,992 갤런) 에서 40 HCF (29,920 갤런)의 물을 사용합니다.

현재, 수도 요금 중 상품 조정 요금 부분은 가든 그로브 시에서 물을 구입하는 다른 공공기관이 정한 물 도매요금의 인상 또는 인하분을 반영하기 위해, 그러한 인상 또는 인하가 당시 적용되고 있던 요금일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한도 내에서 자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14년에 만료됩니다. 물가인상에 대한 조정 승인 이외에도, 가든 그로브 시가 2017년도까지 오(5)년간 물을 입수하기 위해 지불해야만 하는, 다른 공공 기관이 정한 도매 물값에 대한 향후 인상 또는 인하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에서는 이 조항을 다시 채택하고 상품조정요금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현행 승인권을 연장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조정될 요금의 근거

정부법 제53756조에서는 오(5)년의 기간동안 물 도매값의 인상분 및 물가인상에 따른 조정을 거쳐가기 위하여 자동 조절을 허가하는 요금일정을 시에서 채택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가하고 있습니다. 물가인상에 대한 조절분은, 해당 년도의 3월1일 직전까지 일년(3월1일부터 2월28일)의 기간동안, Engineering News Record Construction Costs Index - 로스 앤젤레스 지역 ("ENR")을 근거로 나타난 공사비 인상분 백분율과 같은 백분율을 기반으로 하여, 최고 육(6)퍼센트까지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육(6)퍼센트를 초과하는 모든 조정은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물 도매값의 변화를 반영하는 상품 조정 요금에 대한 자동 조정액은 시에서 다른 공공 기관 (즉, MET/MWDOC 또는 OCWD)로부터 물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기관이 시에 청구하는 액수의 증감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에 직접적으로 기반하게 됩니다. 모든 그러한 조정은 당시에 적용되는 요금일정에 그러한 증감분이 이미 반영되어 있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 구입 비용의 증감액 및 모든 조정에 대한 계산 근거를 기록하는 데이터는 자동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언제나 요청시 일반에 공개될 것입니다.

그러한 조정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 최소한 30일 이전에 고객들에게 공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sup>1</sup>HCF (백 입방 피트)

### 발의안 218

부동산 소유주들은, 발의안218에 규정된 대로, 제안된 요금에 대해 공청회 당시, 또는 그 이전에 서면으로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발의안218과 정부법 제53755조에 따라, 본 공지는 시에서 통상적으로 요금 명세서를 우송하는 영향권 내에 위치한 모든 주소지의 수도 서비스 고객들과, 최신의 평준화 과세명부에 나타나 있는, 영향권 안에 들어 있는 부동산의 주소지에 대한 기록상 소유주들에게 우송되었습니다. 만일 귀하가 발의안 218에 정의된 대로 부동산의 소유주이면서 본 공지에 설명되어 있는 요금의 제안사항에 대해 반대하신다면, 예정된 공청회 이전 또는 공청회에서 시에 서면으로 반대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의견은 우송하시거나 아래의 주소로 시 서기관에게 인편으로 전달하시면 됩니다:

우송시: City Clerk  
City of Garden Grove  
P.O. Box 3070  
Garden Grove, CA 92842

인편: City Clerk  
City of Garden Grove  
11222 Acacia Parkway  
Garden Grove, CA 92840

반대의견서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유효합니다:

1. 해당 부동산의 기록상 소유주(들)의 이름; 그리고
2. 부동산의 위치확인을 위해 감정관의 필지번호 또는 주소; 그리고
3. 반대의견서 (“나/우리는 반대합니다” 로 충분함); 그리고
4. 반대하는 소유주 또는 소유주들의 서명 원본 (복사본은 접수되지 않을 것입니다).

소유주의 숫자에 관계없이 각각의 소유주가 한 표씩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기록상 소유주가 두명이라면, 반드시 두 명 모두 반대의견서에 서명하셔야 합니다. 소유주가 두명 이상이라면, 반대의견서에는 반 이상의 소유주의 서명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 반대의견서를 여러장 제출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으며, 시 서기관은 부동산 하나당 반대의견서 한개만 접수할 것입니다.

본 공지나 요금조정 제안에 대해 의문이 있으시거나, 더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면, 시에 (714) 741-5520 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GARDEN GROVE SANITARY DISTRICT

### 공청회 공지

#### 하수도 요금 및 요금 변경

2012년 2월 14일 오후 6시 30분

Community Meeting Center  
11300 Stanford Avenue, Garden Grove

가든그로브 위생 지구 이사회에서는 물가인상을 반영하기 위하여 향후 하수도 요금 및 요금에 대한 자동 조정을 승인하는 시조례 발의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Garden Grove Community Meeting Center, 11300 Stanford Avenue, Garden Grove에 위치한 시의회실에서 2012년 2월 14일 오후 6시 30분에 공청회를 열 것임을 이에 공지합니다. 이러한 향후 조정은 향후 지구 내의 하수 처리 시설에 대한 운영, 유지, 대체 및 업그レード 비용인상을 각 지구에서 계속 감당해 내고, 산타아나 지역 수질 통제위원회에서 규정하는 규제 의무 및 서비스 의무를 계속해서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 요금 조정을 제안하는 이유

2005년에, 가든그로브 위생 지구에서는, 지구의 하수 처리 시스템을 운영, 유지, 대체하고, 충분한 용량으로 업그レード하며, 산타아나 지역 수질 통제위원회의 오물처리조건에 의해 의무화되어 있는 수리를 하는데 필요한 예상 자금을 밝힌, 지구에서 개발한 최신 재정 분석 및 효율 연구에 근거하여, 새로운 하수도 사용자 요금구조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2005년에 시행된 하수도 사용자 요금구조에 따르면, 각 지구의 자본적 지출로 보는 개량 및 유지 프로그램을 위해 지속적으로 자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물가인상이 있는 경우 최초의 하수도 사용자 요금 구성요소에 대해 매년 조정이 있어 왔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매년 물가상승을 반영하는 조정을 하는 것은, 현존하는 시스템 용량부족을 제거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개선비용, 예상되는 유량 증가에 대한 대처, 현존 시설물의 재활 및 보수, 그리고 부채 해결 등을 위해 지구에서 계속해서 자금을 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입니다.

#### 조정 제안 대상이 되는 요금들

지구의 하수 처리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 각 필지의 소유주에게는 부동산의 이용유형에 따라 한가지 이상의 고객 등급이 매겨져 있으며, 별개의 미터를 통해 물 서비스를 제공받는 필지의 각 부분에 대해 별도의 하수도 서비스료를 매달 지불해야 합니다. 매월의 하수도 사용자 요금은 고정 기본 요금(고객 등급에 따른)과 변동 사용료로 구성되어 있으나, 각 고객 등급에 대해 정해져 있는 최고 청구한도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변동 사용료는 물 사용량이 가장 낮은 격월 기간동안 매월 사용된 물의 양에 근거하고 있으며(12개월에 대한 수도세 청구 데이터 분석에 근거하여 매년 결정됨), 현재는 물 사용량 백제곱피트 ("HCF")당 \$0.86입니다. 다음 표에는 현행 기본료, 사용료 요금 및 최고 청구한도가 나와 있습니다:

사용자 등급	기본요금/수도 미터	사용료 요금 (물 사용량 HCF당)	최고 청구한도/수도 미터
주거용 - SFR 및 뉴플렉스	\$ 3.98	\$0.86	\$ 12.61
세차장	\$ 58.78	\$0.86	\$185.86
교회	\$ 14.28	\$0.86	\$ 45.16
상업용 1*	\$ 3.98	\$0.86	\$ 12.61
상업용 2*	\$ 7.98	\$0.86	\$ 25.23
상업용 3*	\$ 15.95	\$0.86	\$ 59.09
상업용 4*	\$ 31.90	\$0.86	\$118.17
상업용5*	\$ 59.83	\$0.86	\$232.37
상업용 6*	\$ 79.78	\$0.86	\$252.32
호텔/모텔	\$ 79.78	\$0.86	\$252.32
사립학교	\$ 41.29	\$0.86	\$130.58
병원	\$223.37	\$0.86	\$706.48
산업	\$ 44.11	\$0.86	\$139.52
빨래방	\$ 54.83	\$0.86	\$173.36
다세대 주택**	\$ 33.76	\$0.86	\$106.83
공립학교	\$ 53.35	\$0.86	\$168.69

\*\*다세대 주택 사용자 등급 중, 각 개별 유닛이 하수 시스템에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기본 요금 및 사용료 요금에 더하여 각 유닛당 매월 \$1씩 요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상업용 요금은 어떤 사람 또는 기관이 다음 일정표에 정해진 대로 사용한 미터 측정량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등급 #	물 100제공피트/월
1 .....	0 - 10
2 .....	10.1 - 20
3 .....	20.1 - 50
4 .....	50.1 - 100
5 .....	100.1 - 200
6 .....	200 이상

지구에서는 실질 물가인상을 반영하기 위하여 오(5)년의 기간에 걸쳐 하수도 사용자 요금 기본요금, 사용료 요금 및 최고 청구한도에 대해 계속해서 매년 자동 조정을 적용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제안에 따르면, 지구의 하수도 사용자 요금 기본요금, 사용료 요금 및 최고 청구한도는 2012년 7월1일부터 시작하여 2016년7월1일까지, 해당 년도의 3월1일 직전까지 일년(3월1일부터 2월28일)의 기간동안 Engineering News Record Construction Costs Index - 로스 앤젤레스 지역 ("ENR")을 근거로 나타난 공사비 인상분 백분율과 같은 백분율을 기반으로 하여, 물가인상폭을 반영하기 위해 지구 이사회에 다른 조치 없이 최고 육(6)퍼센트까지 매년 7월1일에 자동적으로 조정되게 됩니다. 육(6)퍼센트를 초과하는 모든 조정은 지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지난 오(5)년간, ENR에 따른 연간 평균 물가상승률은 이 (2)에서 삼(3)퍼센트 사이였습니다.

### 조정될 요금의 근거

정부법 제53756조에서는 오(5)년의 기간동안 물가인상에 따른 조정을 허가하는 요금일정을 지구에서 채택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가하고 있습니다. 물가인상에 대한 조절분은, 해당 년도의 3월1일 직전까지 일년(3월1일부터 2월28일)의 기간동안, Engineering News Record Construction Costs Index - 로스 앤젤레스 지역 ("ENR")을 근거로 나타난 공사비 인상분 백분율과 같은 백분율을 기반으로 하여, 최고 육(6)퍼센트까지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육(6)퍼센트를 초과하는 모든 조정은 지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한 조정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 최소한 30일 이전에 고객들에게 공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 발의안 218

부동산 소유주들은, 발의안 218에 규정된 대로, 제안된 요금에 대해 공청회 당시, 또는 그 이전에 서면으로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발의안218과 정부법 제53755조에 따라, 본 공지는 시에서 통상적으로 요금 명세서를 우송하는 영향권 내에 위치한 모든 주소지의 하수도 서비스 고객들과, 가장 최근의 평준화 과세명부에 나타나 있는, 영향권 안에 들어 있는 부동산의 주소지에 대한 기록상 소유주들에게 우송되었습니다. 만일 귀하가 발의안 218에 정의된 대로 부동산의 소유주이면서 본 공지에 설명되어 있는 요금의 제안사항에 대해 반대하신다면, 예정된 공청회 이전 또는 공청회에서 시에 서면으로 반대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의견은 우송하시거나 아래의 주소로 시 서기관에게 인편으로 전달하시면 됩니다:

우송시: City Clerk / GGSD Secretary  
City of Garden Grove  
P.O. Box 3070  
Garden Grove, CA 92842

인편: City Clerk / GGSD Secretary  
City of Garden Grove  
11222 Acacia Parkway  
Garden Grove, CA 92840

반대의견서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유효합니다:

1. 해당 부동산의 기록상 소유주(들)의 이름; 그리고
2. 부동산의 위치확인을 위해 감정관의 필지번호 또는 주소; 그리고
3. 반대의견서 ("나/우리는 반대합니다" 로 충분함); 그리고
4. 반대하는 소유주 또는 소유주들의 서명 원본 (복사본은 접수되지 않을 것입니다).

소유주의 숫자에 관계없이 각각의 소유주가 한 표씩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기록상 소유주가 두명이라면, 반드시 두 명 모두 반대의견서에 서명하셔야 합니다. 소유주가 두명 이상이라면, 반대의견서에는 반 이상의 소유주의 서명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 반대의견서를 여러장 제출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으며, 시 서기관은 부동산 하나당 반대의견서 한개만 접수할 것입니다.

본 공지나 요금조정 제안에 대해 의문이 있으시거나, 더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면, 시에 (714) 741-5520 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